



제393회국회(임시회)
제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301호)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

2022. 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지 원

목 차

[전용기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이재정의원안], [이종성의원안Ⅱ],
[장경태의원안Ⅱ], [윤영덕의원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7

[이인영의원안], [진선미의원안 I], [진선미의원안Ⅱ], [송기현의원안],
[오영훈의원안], [김윤덕의원안], [김용판의원안], [김예지의원안],
[이은주의원안], [최혜영의원안], [이영의원안]

I. 제안경위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
III. 검토의견	38
1. 장애인인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알림 의무화	38
2.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40
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작성	40
나. 점자형 선거공보 폐지 등	44
3.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52
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투표안내문 및 방송광고	52

나. 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에 후보자의 사진 및 정당마크 표시	64
(1)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 등 표시	64
(2) 후보자의 사진 등이 표시된 투표보조용구 및 특수투표용지 사용	66
다. 발달장애선거인에게 사전투표 방법·절차 등의 정보 제공	70
4.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한국수어·자막 제공 의무화)	72
5. 투표보조인에 관한 사항	82
가. 투표소 출입가능 사람에 투표보조인 추가	82
나. 투표보조인의 범위에 활동보조인 1인도 포함	83
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 등도 투표보조인 동반 허용	86
6.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91
7.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 거소투표참관인 배치 등	96
8.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 등	112
9.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기표보조장치 설치 등	116
10. 개정안 시행시기 및 적용의 문제	120

[장경태의원안 I], [이종성의원안 I], [이명수의원안]

I. 제안경위	1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
III. 검토의견	126
1. 정당의 청년후보자 의무추천 등	126
2. 비례대표국회·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시 장애인후보자 의무 추천	141

[전용기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이재정의원안], [이종성의원안Ⅱ],
[장경태의원안Ⅱ], [윤영덕의원안]

I. 제안경위

1. 전용기의원안

가.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0. 6. 9.

다. 회 부 일 : 2021. 12. 22.

2. 용혜인의원안

가.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0. 6. 23.

다. 회 부 일 : 2021. 12. 22.

3. 이재정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0. 7. 17.

다. 회 부 일 : 2021. 12. 22.

4. 이종성의원안Ⅱ

가. 제 안 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6. 15.

다. 회 부 일 : 2021. 12. 22.

5. 장경태의원안Ⅱ

가.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12. 30.

다. 회 부 일 : 2021. 12. 31.

6. 윤영덕의원안

가. 제 안 자 : 윤영덕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2. 1. 27.

다. 회 부 일 : 2022. 1. 2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전용기의원안

최근 청년의 취업·혼인·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율은 34.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40대 이하 후보자의 비율은 시·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0%,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불과 1.1%에 그치고 있음.

기탁금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2. 용혜인의원안

현행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탁금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등으로 정해진 바, 이러한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2018년 기준 20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9만원에 그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운데 현행 기탁금 제도 유지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3. 이재정의원안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30대까지의 후보자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1,101명 중 6.3%인 69명에 그치고 있음.

이에 39세 이하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 후 기탁금 전액을 반환 받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향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

4. 이종성의원안Ⅱ

현행법상 후보자 기탁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득표율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에게 기탁금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정치

참여에 대한 장애물로도 작용될 수 있음.

이에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57조제1항 제1호 등).

5. 장경태의원안Ⅱ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6. 윤영덕의원안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 등).

Ⅲ. 검토의견

전용기의원안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 이종성의원안Ⅱ은 34세 이하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경태의원안Ⅱ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윤영덕의원안은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공직선거별 기탁금을 원래 기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이며,

용혜인의원안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공직선거별 기탁금을 원래 기탁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전용기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이종성의원안Ⅱ
第56條(寄託金)	第56條(寄託金)	제56조(기탁금)	第56條(寄託金) ①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① ----- ----- ----- ----- -----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탁	① ----- ----- ----- ----- -----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탁	----- ----- ----- ----- ----- ----- ----- ----- ----- -----

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u>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 ----- ----- -----. ----- ----- ----- ----- -----.	<u>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 ----- ----- -----. ----- ----- ----- ----- -----.	-----. <후단 삭제> 다만, 34세 이하 후보자(이하 이 장에서 “청년후보자”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보자(이하 이 장에서 “장애인후보자”라 한다)의 기탁금은 해당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한다)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1. ~ 6. (생략)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

② · ③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제56조제1항 각 호에</u> 따른 해당 선거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른 해당 선거기탁금에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제56조제1항</u>--- ----- ----- ----- ----- ----- ----- -----
---	-----------------------	-----------------------	---

관 리 위 원 회 에 기탁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⑫ (생 략) 第271條(不法施設 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 行) ①・② (생 략) ③ 제56조제3항 에 따라 기탁금 에서 부담하는 대 집 행 비 용 의 공제・납입・징 수위탁 등에 관 하여는 제261조 제10항을 준용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 과 같음) 第271條(不法施設 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 行)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56조제4항 ----- ----- ----- ----- ----- ----- -----.
--	--	---

현 행	장경태의원안Ⅱ
第56條(寄託金) ① (생 략) ② 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強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第56條(寄託金)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 라 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신 설>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생략)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포함)에는 기탁금 전액

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u>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⑤ (생략)	③ <u>제56조제4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기탁금 전액이-----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u> <u><후단 삭제></u> ④ <u>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현행	윤영덕의원안
第56條(寄託金) ① (생략) ② 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強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第56條(寄託金)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등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신 설>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생략)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포함)에는 기탁금 전액
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③ <u>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⑤ (생략)	<u>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u> ③ <u>제56조제4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기탁금 전액이-----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u> <u><후단 삭제></u> ④ <u>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	--

또한 이재정의원안은 청년후보자(39세 이하의 후보자)에 대하여,

이종성의원안Ⅱ은 34세 이하의 후보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후보자에 대하여, 장경태의원안Ⅱ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윤영덕의원안은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각각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 행	이재정의원안	이종성의원안Ⅱ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 ----- ----- ----- ----- ----- ----- ----- ----- -----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 ----- ----- ----- ----- ----- ----- ----- -----
1.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1. ----- ----- ----- ----- -----	1. ----- ----- ----- -----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u>100분의 15</u>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가. ----- ----- ----- ----- <u>100분</u> 의 <u>15(39세 이하인 후보자는 100</u>	가. ----- ----- ----- ----- <u>15</u> (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 후보자는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생략)

2. (생략)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
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
비용이 반환할 기탁금
을 넘는 사람은 그 차
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의 고지에 따라 그 고
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분의 10)-----

 나. -----
 -----100
분의 10 이상 100
분의 15(39세 이
하인 후보자는 10
0분의 5 이상 100
분의 10)-----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00분의 10) ----

나. -----

-- 미만(청년후
보자 또는 장애인
후보자는 100분
의 5 이상 100분
의 10 미만)-----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공직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했을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의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했을 경우에는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규모는 공직선거의 종류별로 상이하며, 현행법과 개정안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별 기탁금 규모>

구 분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도 의회의원	시·도지사	자치구· 시군의 장	자치구· 시군 의원
현 행	3억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전용기· 이종성Ⅱ· 장경태Ⅱ· 윤영덕 의원안 (50%)	1억 5,000만원	750만원	250만원	150만원	2,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용혜인 의원안 (30%)	9,000만원	450만원	150만원	90만원	1,500만원	300만원	60만원

<공직선거별 기탁금 반환요건>

구 분	반환요건	
	전액	반액
현 행	15%이상	10%이상 15%미만
이재정·이종성Ⅱ·장경태Ⅱ 의원안	10%이상	5%이상 10%미만
윤영덕의원안	10%이상	(하한 없음) 10%미만

개정안들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청년 또는 장애인인 후보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를 적용받는 세대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기탁금제도는 출마하려는 입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후보자난립으로 인한 선거관리사무와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행정대집행비용 등을 사전 확보하는 데 그 입법목적¹⁾을 두고 있으므로,

기탁금의 인하 여부는 신인 정치인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 진지성 없는 후보자의 난립 방지 필요성, 국민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기탁금과 그 반환기준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1) 2001헌마687, 2003.8.21.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탁금 인하의 혜택을 나이와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청년,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할지는 여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 공직선거에서 특정 집단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추가되는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개정안들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탁금 인하 및 반환요건 완화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연령 범위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용기의원안, 이재정의원안과 윤영덕의원안은 기탁금 인하 또는 반환요건 완화의 대상을 39세 이하인 후보자로 설정하고 있고, 용혜인의원안과 이종성의원안Ⅱ은 34세 이하인 후보자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장경태의원안Ⅱ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²⁾(19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설정하고 있음.

즉, 개정안들은 청년에 대하여 34세, 39세 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청년정치참여 활성화라는 각 개정안들의 취지와 청년층 사이의 형평성, 피선거권 제한연령(선거일 기준 만 18세, 대통령선거는

2)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외) 등을 감안할 때 기탁금 인하와 반환요건 완화 혜택을 받는 청년층의 연령 하한선과 상한선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청년의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입법례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둘째, 법 적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후보자 연령의 판단 기준시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는 피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³⁾ 그런데 장경태의원안Ⅱ와 윤영덕의원안은 각각 안 제56조제2항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탁금을 절반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등록 신청 시’가 기준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한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

셋째, 후보자의 기탁금 인하 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도 인하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규정한 현행법 제60조의2제2항에서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현하고 있는데,⁵⁾ 전용기의원안과 용혜

3) 「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4) 가령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시 34세이고 선거일에 35세가 되는 사람은 그 기준시점에 따라 기탁금의 감액여부가 달라질 것임.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인의원안에서 기탁금을 인하하는 내용은 제56조제1항 ‘본문’에, 장경태 의원안Ⅱ과 윤영덕의원안에서 기탁금을 인하하는 내용은 제5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탁금 인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이 인하될 경우 예비후보자에게도 기탁금 인하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석상 불분명함이 없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 이종성의원안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5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후보자의 기탁금을 인하하고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인영의원안], [진선미의원안Ⅰ], [진선미의원안Ⅱ], [송기현의원안],
[오영훈의원안], [김윤덕의원안], [김용판의원안], [김예지의의원안],
[이은주의의원안], [최혜영의원안], [이영의원안]

I. 제안경위

1. 이인영의원안

- 가.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9인
- 나. 제 안 일 : 2020. 6. 18.
- 다. 회 부 일 : 2021. 12. 22.

2. 진선미의원안Ⅰ

- 가.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 나. 제 안 일 : 2020. 10. 6.
- 다. 회 부 일 : 2021. 12. 22.

3. 진선미의원안Ⅱ

- 가.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 나. 제 안 일 : 2020. 10. 6.
- 다. 회 부 일 : 2021. 12. 22.

4. 송기현의원안

- 가. 제 안 자 : 송기현의원 등 10인
- 나. 제 안 일 : 2021. 3. 17.
- 다. 회 부 일 : 2021. 12. 22.

5. 오영훈의원안

가. 제 안 자 : 오영훈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1. 3. 25.

다. 회 부 일 : 2021. 12. 22.

6. 김윤덕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4. 7.

다. 회 부 일 : 2021. 12. 22.

7. 김용판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1. 6. 10.

다. 회 부 일 : 2021. 12. 22.

8. 김예지의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의원 등 42인

나. 제 안 일 : 2021. 7. 2.

다. 회 부 일 : 2021. 12. 22.

9. 이은주의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은주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10. 26.

다. 회 부 일 : 2021. 12. 22.

10. 최혜영의원안

가. 제 안 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1. 10. 29.

다. 회 부 일 : 2021. 12. 22.

11. 이영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2. 1. 26.

다. 회 부 일 : 2022. 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인영의원안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각종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참정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8항).

2. 진선미의원안 I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들이 기표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의 비밀투표 침해의 우려 또한 있음.

이에,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 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5항 및 제149조제7항).
- 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병원 등에 설치된 기표소에 참관인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도록 함(안 제149조제6항 단서 신설).
- 라.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

3. 진선미의원안Ⅱ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들의 선거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선거정보의 접근은 여타의 정보보다 더욱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함.

이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투표안내 및 후보자정보 등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가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전자문서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제8항 및 제9항).

나.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 제12항).

다.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53조제2항 신설).

라.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6항제1호).

4. 송기현의원안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이는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여 투표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요양소, 병원 등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후보자 측은 원하는 경우 1명을 선정하여 그 투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히 다수의 거소투표자가 생활하는 시설에서 투표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투표사무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시설장’이 기표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선거관리 기반이 취약한 시설의 경우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용지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표용지의 전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을 위촉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예에 준하여 거소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시설 내 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7항 및 안 제149조의2·제154조제5항·제261조제7항제2호자목 신설 등).

5. 오영훈의원안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는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한편, 한국수어 화면을 방영하더라도 그 화면이 작아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통 한국수어 통역사가 1명만 배치되고 있어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언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제261조제6항제1호의2 신설).

6. 김윤덕의원안

현행법은 일반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기표를 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정당명 등이

점자로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 제2항 신설 등).

7. 김용판의원안

현행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하고 있어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 투표 보조인을 선정하여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선거권의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8. 김예지의원안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57조제6항).

9. 이은주의원안

제안이유

참정권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발달 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는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중 선거권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선거정보습득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부재,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지원방안 부재, 기표소 입장 및 기표행위에 있어서의 인적지원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등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마크를 표시하여 발달장애선거인이 후보자와 정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용인 본인 또는 근로지원인에게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 나. 후보자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방송광고를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신설 및 제70조제6항 등).
- 다.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 라. 발달장애선거인이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 및 정당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진·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0조제1항 및 제151조제9항 신설).
- 마.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에게 사전투표의 방법·절차 등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안 제158조제4항 신설).

10. 최혜영의원안

제안이유

참정권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기표소에 기표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낮고,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이들이 기표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 밖에도,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보다 원활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거나, 단체에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79조제12항 및 제81조제9항 신설).

라.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항).

마.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50조제1항).

바.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

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11. 이영의원안

현행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에 한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고,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인 피고용인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알릴 의무화

현행법상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짐.⁶⁾

이은주의원안은 피고용인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릴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이은주의원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② (생략)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	③ ----- ----- -----

6)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 ----- ----- 다만,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

이은주의원안은 피고용인이 장애로 인하여 고용주가 알리는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주가 이를 피고용인에게 직접 또는 근로지원인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은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용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투표시간 보장을 강제하고 있는바,⁷⁾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개정안에 대하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용인이 장애인인 경우 고지방법을 별도로 명문화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2.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작성

최혜영의원안은 선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하여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최혜영의원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④ ----- ----- ----- ----- ----- ----- -----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⑭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5조제4항은-----

-----.

⑨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제65조제4항을-----

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u>아니한</u> 사람	----- -----<u>아니하거나</u>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지 않은 내용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하여 표시하지 <u>아니한</u>-----
3의2. ~ 5. (생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생략)
⑤ ~ ⑫ (생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서는 16면 이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작성됨. 기본적으로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재량규정).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갈음할 수 있음.

점자는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문자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축약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음.

최혜영의원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점자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⁸⁾ 개정안은 이러한 「점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또는 면수와 관계없이 작성하도록 할 경우 점자 인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제작의 어려움⁹⁾과 작성비용¹⁰⁾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필요성, 인쇄량 증가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점자출판시설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표시 방법에 따라 별도의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성우녹음 등)¹¹⁾ 해당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으로 볼 것인지

8) 「점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점자법 시행령에 따른 점자출판시설은 전국 36개소(수도권 20개소)가 있음.

10)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발송비 및 우편요금은 득표율과 무관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 참조)

11)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활용 시 별도 비용 미발생(선관위 제공)

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안 제65조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가 현행법보다 3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을 때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23억 7,900만원, 2026년 지방선거에서 116억 3,800만원,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77억 1,300만원으로 5년간 총 217억 3,000만원(연평균 43억 4,600만원)으로 예상되었음.¹²⁾

나. 점자형 선거공보 폐지 등

진선미의원안Ⅱ은 점자공보를 폐지하고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 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 선관위로 제출하게 하고, 관할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전자문서를 큰 글씨 인쇄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추가로 투표안내문 작성 시 지적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진선미의원안Ⅱ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	제52조(등록무효) ① -----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상의 비용추계서 참조(의안번호:2113021, 회답일:2021.11.23.)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 10. (생략)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 ⑤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10. (현행과 같음)

11.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65조제10항에 따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이하 “선거공보전자문서”라 한다)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나. (생략)

2. (생략)

⑦ (생략)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 5. (생략)

⑨ 후보자가 제12항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
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1. -----

가. -----선거공보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선거공보전자문서

.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이와 동일
한 내용의 전자문서(이하 “후보자정
보공개자료전자문서”라 한다)를-----

<신 설>

⑪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접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후보자정보공개
자료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
를

⑫

책자형 선거공보에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⑫·⑬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④ (생략)

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⑥·⑦ (생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신설>

-----.

⑬·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우편발송-----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8항은-----

-----.

-----“작성할”로 본다.

⑨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공약서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약서(이하 “점자형 선거공약서”

⑨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3의2. ~ 7. (생략)

④ (생략)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생략)

<신설>

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책자형 선거공보-----

3. -----제9항-----

3의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투표안내문 작성 시 지적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략)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2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 12.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접지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4·5 (생략) ④·⑤ (생략) ⑥ (생략) ⑦ ~ ⑫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5조제13항-----제66조제9항----- ----- ----- ----- 6. ~ 12.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의2·4·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	---

진선미의원안Ⅱ과 같이 점자 방식의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을 폐지

하고 전자문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점자형 선거공보 제도의 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문서 제공 방식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해 투표안내문에 그림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적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과 지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투표안내문을 단기간에 동시에 인쇄하여 발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전자문서의 홈페이지 이용 큰 글씨 인쇄형식·음성 방식 제공 등을 통해 후보자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 대비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장애인 참정권 확대라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전국적으로 점자인쇄시설이 선거별 후보자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투표안내문 및 방송광고

이은주의원안은 발달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이은주의원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정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6. ----- ----- ----- ----- ----- ----- ----- ----- ----- -----제10항----- -----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생략)

⑤ ~ ⑮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の登録은 無效로 한다.

1. ~ 10. (생략)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 ④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 (생략)

<신설>

-----.

7. (현행과 같음)

⑤ ~ 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제65조제10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6항-----

-----.

④ (현행과 같음)

⑤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발달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⑤ (생략)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이하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

1. -----

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6항-----

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
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생략)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 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
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
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
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
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⑦ 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
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
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
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

-----.

나. (현행과 같음)

2. -----

-----제6항

-----.

⑧ -----제4항 및 제5항
-----시각장애선거인·발달장애
선거인-----
-----.

⑨ -----

⑩ · ⑪ (생 략)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접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⑬ · ⑭ (생 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 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⑬ -----제9항
-----점자
형 선거공보 및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

⑭ · ⑮ (현행 제13항 및 제14항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5조제4
항·제5항(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
공약서”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
보”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서”
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와 이해

⑨ (생 략)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생 략) 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u>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u> ⑦・⑧ (생 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생 략) ② (생 략) ③・④ (생 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 략) 2. 제65조에 따른 <u>점자형 선거공보</u>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u>하기 쉬운 선거공약서는</u>----- -----. ⑨ (현행과 같음)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자막을 방영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한다.</u> ⑦・⑧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점자형 선거공보</u>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이해하기
--	---

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
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
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
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첨부·발송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4. (생 략)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
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
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 12.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10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5조제14항-----

6. ~ 12.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5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

	달
<u>3의2.</u> (생략)	<u>3의3.</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생략).

이은주의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이하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로 약칭) 1종을 작성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음.

②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③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 발달장애선거인이 있는 세대에 이해하기 쉬운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안은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발달장애선거인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투표안내문을 작성·제출 및 발송케 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광고를 하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음.¹³⁾

다만, 이은주의원안 입법 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안 제 261조제3항제3의2)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쉬운”이라는 표현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의 횟수 및 광고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⁴⁾ 축약된 표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방송광고시 발달

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4)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중합유선방송국(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게 하는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엄밀히 시행되기 어려운 문제점도 따를 수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은주의원안의 내용 중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선거인용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을 각각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문구 해석 및 실제 적용의 어려움, 예산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심도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방송광고에서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해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후보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문구 등을 쓰지 못하게 되는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 우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예상되어 심도있는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는 의견임.

3. 시·도지사선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1)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 등 표시

현행	이은주의원안	최혜영의원안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 · 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u>記號·政黨 推薦候補者의 所屬政 黨名 및 姓名을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無 所屬候補者는 候補者 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の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 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 을 표시하여야 한다.</u>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 · 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 -----<u>기호, 성명 및 사진과 정당추천후 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그 소속정당을 상징하 는 마크나 심벌(이하 제151조에서 “정당마 크”라 한다)</u>----- -----. ----- ----- ----- ----- ----- -----.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 · 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 -----<u>소속정당명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성명 및 사진</u>-----. ----- ----- ----- ----- ----- ----- ----- -----<u>정당명(정당을 상 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u>-----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② ~ ⑩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만이 표시됨.

개정안들은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선거인 등의 투표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할지 여부는 후보자 사진, 정당 심볼이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선거인들의 원활한 투표를 지원하는 효과, 소요 비용, 현재 제공 중인 투표보조용구의 효과 및 사진 삽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됨.

참고로, 외국 사례를 보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포함시키는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으며 정당로고를 포함시키는 국가로 영국,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등이 있음.

<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 투표용지 포함여부 해외사례 >

유형	국가명
후보자 사진	아일랜드
정당로고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가 포함된 외국투표용지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후보자의 사진 등이 표시된 투표보조용구 및 특수투표용지 사용

이인영의원안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기존의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
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별도로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안은 발달장애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이인영의원안	이은주의원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 함의 작성) ① ~ ⑦ (생략) ⑧ <u>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視覺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舉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u>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 함의 작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u>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 함의 작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u>
<신설>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u>를 보조하기 위하여</u>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u> <u>칙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후보자의 사진</u> <u>또는 정당마크가 표시</u> <u>된 투표보조용구를 제</u> <u>작·사용할 수 있다.</u>
--------	------------	--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해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관위규칙)은 투표용지를 점자로 작성하거나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같은 도구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¹⁵⁾

이인영의원안과 이은주의원안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투표보조용구에 후보자의 사진, 정당의 심볼마크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진 등이 표시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선거인이

1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투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¹⁶⁾ 또한, 개정안들을 통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등으로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선거인,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선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들과 같이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지 여부는 후보자 사진, 정당 심볼이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투표를 지원하는 효과, 소요 비용, 현재 제공 중인 투표보조용구의 효과 및 사진 삽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됨.

다만, 이인영의원안이 입법에 반영될 경우 이은주의원안은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달장애선거인에게 사전투표 방법·절차 등의 정보 제공

이은주의원안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발달장애선거인인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사전투표의 방법·절차 등 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이은주의원안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③ (생략)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발달장애선거인인 경우 해당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의 방법·절차 등 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⑤</u>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 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u>⑥</u> ----- <u>제5항</u> ----- ----- ----- ----- -----.
<u>⑥</u>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u>⑦</u> ----- ----- ----- -----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	1. ----- <u>제5항</u> -----

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⑧ (생략)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생략)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 -----. 2. 제6항----- ----- ----- ----- ---. ----- -----.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8조제7항제2호----- ----- ----- -----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를 때 선거일의 투표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은 투표용지

에 기표 후 이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등 선거일의 투표보다 절차가 복잡함.

이와 같은 사전투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은주의원안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발달장애선거인에게 사전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전투표를 하려는 발달장애선거인의 기표행위를 지원함으로써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 입법 시 사전투표 관련 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달장애 선거인의 투표용지가 외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명확화를 통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발달장애선거인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비밀선거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됨.

4.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한국수어·자막 제공 의무화)

개정안들은 방송광고, 방송연설,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에서 자막과 수화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세부적으로, 진선미의원안은 ‘자막 및 수화’를 의무화하면서,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영훈의

원안은 ‘자막 또는 수화’를 의무화하면서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진선미의원안Ⅱ	오영훈의원안
제70조(방송광고) ① ~ ⑤ (생략)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u>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u> <후단 신설>	제70조(방송광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수화 및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방영하여야 한다.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방영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u>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u> <후단 신설>	⑦·⑧ (현행과 같음)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화 및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의 크	⑦·⑧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u>기로 방영하여야 한다.</u>	<u>이상의 크기로 방영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⑫----- ----- ----- -----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방영하여야 한다.</u>	⑫----- ----- ----- ----- ----- <u>-. 이 경우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방영하여야 하며, 후보자마다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다.</u>
⑬・⑭ (생략)	⑬・⑭ (현행과 같음)	⑬・⑭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생략)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 ----- --.	⑥----- ----- ----- ----- --.

1. <u>제70조제3항·제71조 제10항·제72조제3항</u>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제1항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u>제2항·제272조의3제4항</u>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⑦ ~ ⑫ (생략)	1. <u>제70조제3항 및 제6항</u> (제7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제72조제2항 및 제3항</u>----- ----- ----<u>제82조의2제12항</u> (제82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제272조의3제4항</u>----- -----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70조제6항(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72조제2항(제73조제4항·제74조제2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2조의2제12항(제82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
--	--	--

	음)	음)
--	----	----

이영의원안은 방송광고와 방송시설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의무화하고,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담·토론회에는 한국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이영의원안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생략) 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다.</u> ⑦·⑧ (생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생략)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③·④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생략)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방영하여야 한다.</u> ⑦·⑧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방영하여야 한다. 단,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어를 방영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 방송,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에서 한국수어·자막 제공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는데¹⁷⁾, 개정안들은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실질적 참정권 보장에 기여하고, 「한국수화언어법」의 이념에 따라 한국수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18)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다만 이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비용부담의 주체, 방송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 선택의 자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됨.

의무화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은주의원안과 이영의원안은 방송광고(제70조), 방송시설이 주관하는 후보자연설 방송(제72조)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준용하고 있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71조), 경력방송(제73조),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제74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2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제137조의2) 개최 시에도 한국수어·자막 제공이 의무화됨.

최혜영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제79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1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82조의2)까지 의무화하여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82조의3), 정당의 정책 토론회(「정당법」 제39조)에도 적용되도록 규율하고 있음.

또한 이은주의원안은 수어나 자막 둘 중 하나 이상의 제공을 의무화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 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반면, 최혜영의원안은 수어와 자막 모두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의무화를 할 것인지, 의무화를 한다면 수어와 자막을 모두 제공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영의원안은 추가로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어를 방영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수어·자막 관련 규정 현황 >

사안	조문	주요내용	이은주의원안	최혜영의원안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70⑥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재량 규정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수어와 자막 방영·제공 의무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72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70⑥ 준용)	§71			
정당·정책의 방송연설 (§70⑥ 준용)	§137의2			
경력방송(후보자 사진·성명·기호·주요 경력 등 알림) (§72② 준용)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2② 준용)	§74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72② 준용)	§82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79	규정 부존재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8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포함)	§82의2 ⑫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82의2⑫ 준용)	§82의3	준용 규정		
정당의 정책토론회(중앙선거방송토 론위원회 주관, 비선거기간) (§82의2⑫ 준용)	정당법 §39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6헌마285, 2009. 5. 28. 결정을 통해 선거 운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각장애 선거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광고 및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여부는 상기 현재 결정 취지,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 방송사업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후보자등 방송연설(§71③), 정강·정책의 방송연설(§137조의2

⑥), 경력방송(§73④),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74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82④)와 같은 준용 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수어와 자막 모두를 의무화하는 것은 한국방송협회의 의견과 선거 운동 시기 수어통역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및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¹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 진선미의원안II에 대한 행안위 소위('20. 11.) 에서의 한국방송협회 의견

- 법안 취지는 이해하나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 필요
 -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이미 방송광고를 제외한 선거방송의 자막, 수어방송 병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방송사업자 제작·편성에 대한 지나친 간섭임.
 - 방송사의 기술적·재정적 문제, 수화통역사·숙기사 수급문제 고려 필요
 - 방송광고의 수어삽입은 후보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특히 자막 및 수어를 의무화할 경우 현행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기준(방송시간 중 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어 5%)을 크게 상회하여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9)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후보자 방송광고의 수어·자막 방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방송주체별로 그 제작 방식 및 소요비용을 알 수 없어,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렵다고 판단

5. 투표보조인에 관한 사항

가. 투표소 출입가능 사람에 투표보조인 추가

진선미의원안 I 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진선미의원안 I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u>직원 및 투표사무원</u> 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 - ----- ----- ----- ----- <u>직원, 투표사무원 및 제157조제6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명</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7조제6항²⁰⁾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지명된 2인의 경우 현재에도 투표소를 출입하여 장애인의 기표를 보조하고 있음.

20)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제163조제1항²¹⁾에서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규정 간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투표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문 간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투표보조인의 범위에 활동보조인 1인도 포함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용판의원안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 외에 평소 신체활동이나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여 온 사람 1인도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1)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현행	김용판의원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생략)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選舉人は 投票所の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 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 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は 그 家族 또는 本人 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 조하게 할 수 있다.	⑥----- ----- ----- ----- ----- ----- ----- 가족, 평 소 그의 신체활동이나 이동보조 등 을 지원하여 온 사람----- -----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투표보조인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이들의 투표행위를 보조하여 선거인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다만, 해당 과정에서 선거인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표보조인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어 현행법은 투표보조인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가족인 투표보조인은 1인,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은 예외

없이 2인으로 하여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가 담보된다고 간주하여 1인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가족이 아닌 자로서 본인이 지명하는 자가 투표보조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된다고 담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복수의 투표보조인이 상호 견제 아래 투표를 보조하게 하여 투표보조인이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표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임.²²⁾

김용판의원안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활동을 정상시에 지원해온 사람(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비록 해당 선거인의 가족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선거인과 가족 못지않은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활동보조인은 1명으로도 선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 등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대동한 사람이 활동보조인인지 여부를 객관적으

2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로 판단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해당 선거인이나 활동보조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활동보조인의 개념이나 자격, 판단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의 활동을 평소 보조하여 온 활동보조인은 1인으로도 투표보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21년 5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 등도 투표보조인 동반 허용

김예지의원안과 최혜영의원안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외에 투표보조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에 더해 최혜영의원안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 외에 공적 보조원을 투표보조인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김예지의원안	최혜영의원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생략) ⑥ 選舉人は 投票所の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u>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u>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 ----- ----- ----- -----<u>자신이</u> -----<u>기표할 수 없는 선거</u> -----<u>인이나 정신적 장애로</u> -----<u>인하여 혼자 기표소에</u> -----<u>들어가서 기표하는 것</u> -----<u>이 현저히 곤란한 선</u> -----<u>거인</u>----- -.	----- ----- ----- ----- ----- ----- ----- -----<u>자신</u> -----<u>이 기표할 수 없는 선</u> -----<u>거인이나 발달장애 등</u> -----<u>정신적 장애 또는 노</u> -----<u>령으로 인하여 혼자</u> -----<u>기표소에 들어가서 기</u> -----<u>표하는 것이 현저히</u> -----<u>곤란한 선거인은 그</u> -----<u>가족, 본인이 지명한 2</u> -----<u>인 또는 공적 보조원</u> -----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²³⁾에 따라 선거권을 가짐. 이는 모든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무원을 선출할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이는 헌법 차원의 요청임과 동시에 현행법²⁴⁾ 및 「장애인차별금

23)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²⁴⁾ 등 개별법률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함.

김예지의원안과 최혜영의원안은 투표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는 선거인의 범위에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기표소에 투표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라는 요인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의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정신적 장애’는 범위가 불명확하고, ‘현저히 곤란한’ 부분의 해석상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 ‘노

24)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령’,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등 투표 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는 선거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일단 ‘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는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은 장애의 종류로 지적장애인²⁶⁾, 자폐성장애인²⁷⁾, 정신장애인²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혜영의원안은 김예지의원안과 달리 ‘발달장애 등 정신적장애’로 정신적장애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음.

다만,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과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는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보다 장애로 인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지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²⁹⁾ 설사 외부에 드러나더라도 곤란함

26)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27)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8) 양극성 행동장애 등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9) 현행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대법원이 해당 선거인을 시력상실 등 시각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형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으로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의 정도(현저한지 여부)는 선거인 개개인과 투표관리관 등 투표소 내의 인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관성있고 공정한 선거사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최혜영의원안에 따른 ‘공적 보조인’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동행할 수 있는 투표보조인으로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적 보조원’의 개념 및 자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앞서 검토한 김용판의원안에 따른 활동보조인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결론적으로 김예지의원안과 최혜영의원안의 도입여부는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이라는 개정안들의 취지 및 필요성과 함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①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②시지각 협응능력(눈의 시각정보와 손의 운동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능력) 저하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보조인의 동행을 인정하고 있음.

6.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진선미의원안 I 과 최혜영의원안은 투표소는 승강기 및 경사로 등 장애인·노약자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혜영의원안은 투표소 외에 사전투표소 역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진선미의원안 I	최혜영의원안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생략)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u>편리한</u>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편리한</u> <u>고 승강기 및 경사로</u> <u>등 장애인의 통행이</u> <u>가능한 편의시설이 있</u> <u>는</u> ----- -----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편리한 곳 중</u> <u>건물 1층 또는 승강기</u> <u>· 경사로 등 노약자·</u> <u>장애인 등 거동이 불</u> <u>편한 선거인의 통행이</u> <u>가능한 편의시설이 있</u> <u>는 곳에</u> ----- ----- ----- ----- ----- -----.

③・④ (생략) ⑤ (생략) ⑥ ~ ⑪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u>제1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u>,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⑤・⑥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제147조제2항부터----- ----- ----- -----. ⑤・⑥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음.³⁰⁾

30)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

그런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일반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층수별 현황을 보면 일반 투표소의 경우 설치장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는 1,490곳(10.8%)이 있었으며, 이 중 16.5%인 243곳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투표소의 경우에는 설치장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가 전체 3,511투표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749곳(49.8%)에 이르렀으며, 이 중 34.2%인 598곳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의 설치층수별 현황>

[일반투표소]

총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승강기미설치 투표소(1층제외)
13,837	272 (2.0%)	12,347 (89.2%)	780 (5.6%)	438 (3.2%)	243 (1.8%)

[사전투표소]

총 사전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 이상	승강기미설치 투표소(1층제외)
3,511	96 (2.7%)	1,762 (50.2%)	953 (27.1%)	700 (19.9%)	598 (17.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진선미의원안 I 과 최혜영의원안은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노

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약자·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임.

한편,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된 현행법 규정 체계를 분석해 보면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 현행법 제147조제2항 외에 같은 조 제11항에서 교통약자 접근 편의 보장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는 투표소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표소 설치 관련 현행 규정 체계 >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 투표소 설치장소 선정기준

- 투표구안의 생활 중심지로 선거인이 잘 알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
- 투표하기 편리하고 투표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모의 장소
-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다음의 장소
 -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에는 승강

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
-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

따라서 개정안들의 입법여부는 위와 같은 현행 규정 체계, 이동약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 기존 투표소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다양하므로 투표소 장소를 승강기 및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구비한 시설로 한정할 경우 건물 노후화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 투표장소 설비에 필요한 적정 넓이의 공간 부족 등으로 장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공공기관 또는 민간시설 등에서 투표소 장소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점 등으로 장소 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외곽에 있어 선거인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³¹⁾³²⁾

31) 추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마다 투표소 변경을 최소화하고, 1층 투표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투표소별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거동불편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는 입장임.

32) 개정안은 ‘승강기 및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절충하는 측면에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7.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 거소투표참관인 배치 등

송기헌의원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설치한 기표소에 관한 「공직선거법」상의 특례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제154조제5항 등을 신설하여 거소투표용지가 투표권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전달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송기헌의원안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② (생략)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 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 <u>사전투표참관인</u> 과 개표참관인(예비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 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 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 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 를 받는다.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전투</u> <u>표참관인</u> · <u>거소투표참관인</u> ----- ----- ----- ----- ----- ----- ----- ----- ----- ----- -----.
제12조(선거관리) ① 中央選舉管理委員 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事務를 統轄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u>투</u>	제12조(선거관리) ① ----- ----- ----- ----- ----- <u>투</u>

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5. (생략)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
선투표참관인의 手當과 식비

7. (생략)

④ (생략)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
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
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
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
여야 한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
인 거주시설

② ~ ⑥ (생략)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
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49조의2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
참관인, 제161조(투표참관)-----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장애
인 거주시설(이하 이 조 및 제149
조의2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이 경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⑧ (생략))

<신설>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현행과 같음)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설치한 기표소에 관한 특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제1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치한 기표소에는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소투표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4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소투표관리관을, 거소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소투표사무원을, 거소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거소투표참관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관리관 또는 거소투표사무원의 추천협조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표소에서 거소투표를 개시하는 경우 거소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거소투표참관인은 이를 참관하여야 한다.

④ 거소투표참관인의 선정·교체와

	투표참관 등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과 제1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소”는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소”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일 전 7일까지”는 “선거일 전 12일까지”로 본다. ⑤ <u>거소투표관리관 및 거소투표사무원의 위촉과 추천 협조, 거소투표참관인 신고서의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 ④ (생략)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u>거소투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경우 그 수령자는 거소투표용지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u>
⑤·⑥ (생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 ----- -----.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	1. ----- ----- ----- ----- -----

-----사전투표참관인 · 거소
투표참관인-----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및 거소투표관리관

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増減罪) ① (생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u>사전투표사무원</u>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行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다. (생략) 라. 제161조제7항(<u>제162조제4항</u>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 아. (생략) 3.・4. (생략) ④・⑤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増減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사전투표사무원・거소투표사무원</u>----- ----- -----.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제149조의2제4항</u> <u>및 제162조제4항</u>----- ----- ----- -- 마. ~ 아.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
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바. (생 략)

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
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
지 아니한 자

아.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마. (생 략)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
· 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146조의2제3항, 제147조제10
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9조의2
제2항-----

아. (현행과 같음)

자. 제15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령
한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지체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⑧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48조제3항,
제149조의2제1항-----

-----사전투표사무원 · 거소투

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 ~ 6. (생략) ⑨ ~ ⑫ (생략)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u>사전투표관리관</u>, 공정선거지원단원, <u>투표</u> 및 <u>개표사무원</u>(공무원인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u>표사무원</u>----- ----- ----- 2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 ----- -----<u>사전투표관리관</u>, <u>거소투표관리관</u>-----<u>투표·거소투표</u> 및-----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소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설치한 기표소에 관한 특례 신설에 대하여 검토하면,

현행 제154조제1항³³⁾은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를 거소 투표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²³⁴⁾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투표용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선거일 오후 6시³⁵⁾까지 도착한 거소투표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였다가 개표³⁶⁾하게 됨.

한편, 현행 제149조³⁷⁾제3항은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

33)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 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4) 제158조의²(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35) 제155조(투표시간) ⑤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36)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37)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일정 기관이나 시설에서 거주하는 거소투표자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있음.

다만, 현행 제146조의2제1항³⁸⁾이 (사전)투표구(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하고,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사무원(제147조제9항³⁹⁾)과 사전투표사무원(제148조제3항⁴⁰⁾)을 두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제149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위촉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송기헌의원안은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도 거소투표관리관과 거소투표사무원을 두도록 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기관·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8)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39)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40)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제149조제6항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 참관인 선발의 기준과 참관인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아니하므로 송기헌의원안은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⁴¹⁾까지의 규정과 제162조 제2항 및 제3항⁴²⁾을 거소투표 참관인의 선정·교체 및 투표참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거소투표소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고 거소투표소에서의 선거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을 두도록 하는 송기헌의원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41) 제161조(투표참관)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42)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도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의 법제도 하에서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외 시설을 구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거소투표소에만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두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 있고, 투표인이 많지 않은 거소투표소에 까지 거소투표관리관 등을 두도록 하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될 우려가 있음.

또한 거소투표에 대한 정당·후보자의 참관을 활성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의 진행과정 등 입회, 선거용품 지원, 교육 매뉴얼 배부 및 기관·시설 책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관·시설 내의 기표소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시설의 자율성과 거소투표 관리의 공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 관리 인력 확보와 예산 소요, 다른 법정사무 관리에 미치는 영향, 병원·요양소 등 거소투표할 수 있는 다른 기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송기현의원안은 제149조제7항 후단을 신설하여 기관·시설안의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

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기표소 내에서의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현행 제147조제6항⁴³⁾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한 제148조는 제4항⁴⁴⁾에서 현행 제147조제6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기표소의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내부의 체계적인 측면과 입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반복하기 보다는 현행 제148조와 같이 제147조제6항을 준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비하고 기표소 설치장소에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되는 부착물이 게시되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임시철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항은 당해 사항을 법정화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⁴⁵⁾

다음으로 송기헌의원안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였으나 거소투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경우 지체없이 이

43)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⑥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4)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조항에 대하여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비에 있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 설치) 규정의 일반투표소의 기표소 설비와 같이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의 자유를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를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지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거소투표용지를 본인 외의 자가 수령⁴⁶⁾하였으나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여 투표인의 의지와는 달리 투표참여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여 거소투표신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2호⁴⁷⁾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이 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본인 외의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항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이 거소투표용지 전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정조항이 거소투표신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46) 거소투표용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본인 수령이 원칙임.

47)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3년 이하 징역)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들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시각장애이용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 등

김윤덕의원안은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현 행	김윤덕의원안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생략) <u><신설></u>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 <u>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거소투표용지를	④ -----第3項-----

발송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와 選舉
日 전 2日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
된 거소투표자의 名單을 작성하여
選舉日前日까지 읍·면·동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
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 ⑥ (생략)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
지의 전송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
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
라 한다)에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선상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
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로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 ④ (생략)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생략)

③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
지와 같음)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
지의 전송 등) ① -----

-----.

----- 제154조 제3
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3. (생략)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1. 제154조제3항----- ----- 2. 3. (현행과 같음) ④ ----- ----- ----- -----제154조제4항-----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등의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제65조), 선거공약서(제66조), 투표안내문(제153조) 작성시 시각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점자를 사용하도록 하며, 투표용지(제151조) 작성에 있어서도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정함.

김윤덕의원안은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154조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용지의 특례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은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외부에 드러내게 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151조제8항⁴⁸⁾을 참고하여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 관한 거소투표용지의 제작·발송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김윤덕의원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수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발송할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용지가 특정되어 비밀투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특수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점자가 표시되어 이를 투표지 위에 올려 점자를 읽어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보조용구’는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배송 과정에서 투표보조용구의 점자가 훼손될 수 있고, 등록된 정당 또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보조용구가 길어지는 경우 우편배송이 곤란할 수 있다는 설명임.

48)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⑧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요컨대,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의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사항이나, 거소투표시에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의 제작과 발송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또는 관련한 역기능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9.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기표보조장치 설치 등

진선미의원안 I 은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병원 등에 설치된 기표소에 참관인이 1명도 없는 경우 위원회 직원 중 1명을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진선미의원안 I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생략)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 --- <u>좌석·기표보조장비(신체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보조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있음.

< 특수형 기표용구 >

마우스피스형	손목밴드형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입에 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표용구	 손의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가 손목에 밴드를 감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표용구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선미의원안 I 은 장애인의 투표권 실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⁴⁹⁾

둘째, 진선미의원안 I 은 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설치되는 기표소에 대해 참관인이 1명도 없는 경우 구·시·군 선관위 직원 중 1명을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병원·요양소·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기관의 장은 시설 내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상기 기관·시설에 설치·운영되는 기표소에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⁰⁾ 실제 참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임.

50)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선거 기준으로 시·관·시설 기표소는 818곳, 참관인이 없는 투표소는 128곳이었음.

< 선거별 기관·시설 거소투표소 및 참관인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관·시설 기표소	참관인	참관인이 없는 투표소
제19대 대선 (2018년)	1,089	4,267	51
제7회 지선 (2018년)	885	3,248	0
제21대 국선 (2020년)	818	2,038	128

※ 제21대 국선 시 코로나19 대응방침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기관·시설 존재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법상 병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설치되는 기표소의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선미 의원안 I 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현황을 참관하도록 할 경우 기관·시설 내의 거소투표 부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의 한정된 인력구조(위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회당 평균 6명~9명), 선거기간 중 집중되는 수많은 법정 절차사무 등으로 위원회 전임직원의 참관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⁵¹⁾

10. 개정안 시행시기 및 적용의 문제

개정안들이 입법에 반영될 경우 이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장애인, 노약자 등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를 감안할 때, 조속한 시행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수어통역인력 수급, 점자출판 시설 확충,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 투표소 확보 문제 등 개정안 적용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51) 추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에 대한 정당·후보자의 참관을 활성화하고, 선거용품 지원, 교육 매뉴얼 배부 및 기관·시설 책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관·시설 내의 기표소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기관·시설의 자율성과 거소투표 관리의 공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임.

[장경태의원안 I], [이종성의원안 I],
[이명수의원안]

I. 제안경위

1. 장경태의원안 I

가.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25인

나. 제 안 일 : 2020. 6. 30.

다. 회 부 일 : 2021. 12. 22.

2. 이종성의원안 I

가. 제 안 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5. 24.

다. 회 부 일 : 2021. 12. 22.

3. 이명수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명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1. 7. 2.

다. 회 부 일 : 2021. 12.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장경태의원안 I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결혼, 보육, 부채 등 청년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지만, 정치권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기적 증상에 대한 처방에 그치고 있음. 청년정치인의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함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 정치 참여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에게도 후보자 추천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청년정치 참여율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3 신설,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57조의2제4항 및 제261조제3항

제1호의2 신설 등).

2. 이종성의원안 I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 제19대국회에서는 2명에 불과하였고 제20대국회에서는 전무하였으며, 제21대국회에서도 여전히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3. 이명수의원안

현행법에는 대의기관의 성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일정 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후보자 할당제가 도입되어 있음.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 당선인의 비중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하여 28.3%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후보자 할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년과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바, 이들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청년 및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치 과정에 보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

4항 및 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당의 청년후보자 의무추천 등

장경태의원안 I 과 이명수의원안은 ①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청년·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하고, ②지역구 후보자 추천시 청년 및 장애인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장경태의원안 I 은 ③여성 및 청년후보자에게 당내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장경태의원안 I	이명수의원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② (생략)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② (현행과 같음)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 ----- ----- ----- ----- ----- ----- -----하 고, 그 후보자 중 100 분의 20 이상을 청년 (각 정당의 당헌·당규 에 따른 청년을 말한 다, 이하 같다)으로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u>추천하여야 한다.</u> ④ ----- -----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에 후보자 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 의 상위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 자 중 100분의 20 이 상을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 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으로 추천하 여야 하고, 100분의 2 0 이상을 청년(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 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추 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 여 성이자 장애인인 후보 자를 추천한 경우 해 당 후보자는 전단에 따른 장애인 의무 추 천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 음)
--	--	---

-----여성으로, 100
분의 20 이상을 청년
으로-----.

⑤ -----

--여성으로, 1명 이상
을 청년으로-----
-----.

⑥

----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

-----제
외한다. 이하 제7항에
서 같다-----
-----.

– 128 –

<신 설>

<신 설>

제47조의3(정당의 후보
자 추천 명단 공개)
제47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선거에
각각 추천한 여성후보
자 및 청년후보자의
명단 및 비율을 공개

따른 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선거에 후
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는 국회의원지역구마
다 1명 이상을 청년으
로, 1명 이상을 장애
인으로 추천하여야 한
다.

⑧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선거에 제6
항 및 제7항에 따른
의무 추천 요건을 2개
이상 충족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
에는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여성,
청년 또는 장애인 중
어느 한 명만을 추천
한 것으로 본다.

[illegible]

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 ----- ----- ----- -----.	----- ----- -----.
⑨ ~ ⑮ (생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 -----.	제52조(등록무효)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區別로 選舉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u>같은 조 제3항에 따른 女性 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u>, 第48條(選舉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2. ----- ----- ----- ----- ----- -----<u>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 및 청년후보자 추천의 비율을</u>----- ----- ----- -----	

<신 설>

3. ~ 11. (현행과 같음)

② -----

-----여성후보
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

② 제4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illegible]

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수(1 미만의 단수
는 1로 본다)에 미달
하는 경우와 그 여성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
로 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 설>

여성후보자

또는 청년후보자의 등

록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op, middle, and bottom) spaced evenly down the page. The lines are intended to guide letter height and placement for children learning to write.

④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라 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가 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③ ~ ⑤ (생략)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④ (생략) ⑤ 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 ~ ⑫ (생략)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는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2조제5항----- ----- -----. ----- -----. ⑥ ~ ⑫ (현행과 같음)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u>미달하는 경우와 그 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2조제5항----- ----- -----. ----- -----. ⑥ ~ ⑫ (현행과 같음)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	---	--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생 략)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1. (생 략) 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19조(선거소청) ① (생 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 -----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19조(선거소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52조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 -----
--	---

③ ~ ⑦ (생략)

[illegible]

第223條(當選訴訟) ① -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
員選舉에 있어서 당선
의 효력에 異議가 있
는 政黨(候補者를 추
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
決定日부터 30日이내
에 제52조제1항·제3
항 또는 제19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사
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
을, 第187條(大統領當
選人の 決定·公告·
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
員當選人の 決定·公
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
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の 決定
·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
결정과 비례대표국회
의원의석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
에 의한 決定의 違法
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

제52조제1항·제2항·
제5항

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7조의2제4항	
<u>을 위반하여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 당헌·당규로 정하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자</u> 2. ~ 5. (생략) ④ ~ ⑫ (생략)	<u>을 위반하여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 당헌·당규로 정하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개정안들의 내용을 설명하면 우선 ①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청년·장애인할당제 도입의 경우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시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거나(장경태의원안 I),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명수의원안).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추천한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의 명단 및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장경태의원안 I).

②지역구 후보자 추천시 청년·장애인 추천 활성화의 경우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장경태의원안 I). 또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명수의원안).

③당내경선 시 여성 및 청년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 의무화의 경우 당내경선을 실시할 때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당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장경태의원안 I)

개정안들은 청년 및 장애인 계층의 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 및 장애인 계층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청년 및 장애인들이 국회 및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및 장애인들이 과소대표 되고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들은 정당의 자유로운 공직후보자 추천권 행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청년이나 장애인이 아닌 또다른 사회적 약자나 개정안들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청년층⁵²⁾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청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장경태의원안 I 은 청년의 범위를 개별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생각되나 청년비율 미준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무효화, 청년 가산점 미부과 정당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규정된 상황에서 법적용의 일관성, 명확성을 위해 법률로 청년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당헌·당규에

52) 장경태의원안 I 의 경우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고, 이명수의원안의 경우 25세 미만 35세 이상의 사람들이 될 것임.

서 청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안의 경우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피선거권 제한연령 하향(25세 → 18세) 등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 적절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청년계층의 정치적 참여 권리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더불어 할당제와 같은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비례대표국회·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시 장애인후보자의 의무 추천

이종성의원안 I 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이종성의원안 I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② (생략)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때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략)

⑧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録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録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舉權者の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の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

③ -----

-----여성으로,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제49조 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으로 추천하되-----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순위 또는 장애인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야 한다. ⑨ ~ ⑮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 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 1. (생략)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區 別로 選舉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 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u>여성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u> 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舉權者 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 견된 때 3. ~ 11. (생략) ② ~ ④ (생략)	-----.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u> <u>또는 장애인후보자 추천의 비율</u> <u>을</u>----- ----- -----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장애인후 보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 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	--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인구는 2,633,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중 장애인인 국회의원은 총 4명으로 국회의원 총수(300명)의 약 1%에 불과해 전체 인구 구성비와 비교했을 때 과소대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종성의원안 I 은 장애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인 점을 감안하여,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됨.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의원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그 순번에 따라 차례로 의원으로 당선되므로, 이종성의원안 I 에 따를 경우 국회 및 지방의회의 장애인 대표성이 향상되어 정치적 다양성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장애의 유무 외에도 직업, 세대,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수 집단과 소수집단이 구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한정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그 외의 집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으로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이종성의원안 I 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당이 부여하는 장애인인 후보자의 후보자명부 순위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장애인인 후보자의 당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후보자추천비율에 반드시 비례하여 장애인인 후보자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아님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정당의 후보자 추천 자율성 제한,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정당별 후보자수·당선인수가 상이한바, 소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추천비율이 낮아 적용이 불가능한 점, 장애인후보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하여 명부순위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32